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6. 29 선고 2020가합12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렬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김성돈, 정소용

변론 종결2022. 5. 18.

판결 선고2022. 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8. 3. 8.자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3. 12. 접수 제1861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8. 3. 8. 피고(변경전 상호 D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를 C, 수탁자를 피고, 공동우선수익자를 E조합 및 F조합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3. 12. 접수 제18613호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7호증의 1 내지 1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상가건축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1. 11. 1억 원, 2018. 5. 27. 1억 원, 2018. 7. 6. 1억 원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원고는 C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신탁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요지 우선수익자인 E조합 및 F조합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원고 등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신탁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신탁법 제8조 제1, 2항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2) 판단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여러 명의 수익자 중 일부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제1항 본문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신탁법 규정은 수탁자의 악의를 사해신탁 취소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대신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 사해신탁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사해신탁 취소 소송에서 선의의 수익자나 수탁자의 당사자적격까지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신탁법 규정에 따르면,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하더라도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선의인 경우에는 수탁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우선수익자인 E조합 및 F조합이 선의인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이 법원의 E조합 및 F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조합 및 F조합은 C과는 이 사건 신탁계약과 함께 이루어진 대출거래 외에 다른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E조합 및 F조합의 C에 대한 대출 관련 자료상으로도 C이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신용이나 재정 악화 등으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내용은 없는 점, ③ E조합 및 F조합의 C에 대한 대출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합계 114억 원에 이르는 반면, E조합 및 F조합의 대출금은 각 48억 원과 7억 원에 불과하여 E조합 및 F조합과 C의 대출 거래가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그러한 상황에서 E조합 및 F조합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로 인한 담보 상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C에게 대출을 실시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우선수익자인 E조합 및 F조합으로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정호

판사이나리

판사허유정

별지